

의안번호	제 368 호
의 결 연 월 일	2020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0년 3월 4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

#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8
----------	-----

제출연월일 : 2020년 3월 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부패행위의 신고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신고대상자를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보조금 지원받은 단체까지 확대(안 제2조)
- 신고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 및 형법상 중대범죄 공소시효기간으로 확대(안 제4조)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6. 비용추계서 :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

##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등”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소속기관, 시·군과 소속기관의 공무원,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또는 도와 시군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공직유관단체,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1.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도와 시·군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에 대한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2. 제1호의 행위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다만 뇌물관련 등 중대범죄는 「형법」에 따른 공소시효까지 가능하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 기준(제14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조례 제2조제3호가목 관련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li><li>·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li></ul>
조례 제2조제3호나목 관련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추정 또는 환수 결정금액의 10퍼센트 이내</li></ul>
조례 제2조제3호다목 관련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li><li>· 알선 또는 청탁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li></ul>
조례 제2조제3호라목 관련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li><li>·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행위 신고 시 100만원 이하</li></ul>
조례 제2조제3호마목 관련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li><li>·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시 100만원 이하</li></ul>

※ 같은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무원 등"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소속 기관, <u>시·군과 소속 기관 또는 도와 시군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말한다.</u></p> <p>2.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u>도, 시·군 소속 공무원과 도, 시·군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 소속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도와 시군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을 말한다.</u></p> <p>3.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무원 등"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소속기관, <u>시·군과 소속기관의 공무원, 공무원직, 기간제 근로자 또는 도와 시·군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공직유관단체,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u></p> <p>2.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u>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도와 시·군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을 말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제4조(신고기한)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u>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u></p>	<p>제4조(신고기한) 부조리에 대한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p> <p>1. <u>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u></p> <p>2. <u>제1호의 행위 중 금전, 물품, 부</u></p>

현행	개정안
	<p><u>동산, 향응,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이내(다만 뇌물관련 등 중대범죄는 「형법」에 따른 공소시효까지 가능하다)</u></p>

## 관련법령 발취

### □ 형법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사 유

- 이 개정조례안은 예상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 ○ 작성자 : 감사관 임양기